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24 발의연월일: 2024. 12. 2.

발 의 자: 박용갑・박정현・김영호

염태영 · 복기왕 · 황정아

소병훈 · 장종태 · 문진석

조승래 • 문대림 • 정동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2022년까지 총 322.7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으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4년 3분기 기준 0.76명으로 하락해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 예산이 템플스테이 운영, 종교문화행사지원, 공무원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저출산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

이에 인구증감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업의 중·장기적인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는 인구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출하는 예산안의 부속서류에 인구인지 예산서를 추가하고, 인구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등을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호의2, 제36조의3, 제44조의2제1항제7호의2, 제60조제1항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6122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0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1호)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
- 2. 인구 증감 및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 등에 미치는 효과
-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4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인구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방재정의 인구 증감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등 성과 분석 등을 위한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인지 예산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인구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인지 예산서 작성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인구영향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인구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국공립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인구정책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인지 예산서 작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인구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인구정책담당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 1. 인구인지예산 대상 사업 선정 및 관리
- 2. 인구인지예산 대상 사업 성과 및 지표 관리
- 3. 인구영향평가기관 지원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인구영향평가위원회와 제2항에 따른 인구영향평가기관, 제3항에 따른 인구인지예산 전담부서 등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6조의3(인구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목표 달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인구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인구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③ 인구인지 예산서는 인구 증감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등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인구인지 예산서 작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인구인지 예산서

제60조제1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36조의3에 따른 인구인지 예산서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구인지 결산서

9의3.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한 인구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 및 정책개선 실적 등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이하 "인구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구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의 개 정규정은 2027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9호의2 및 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7회계연도 예산서 및 결산서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u>여</u>	② <u>다</u>
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u>음 각 호의 사항을</u>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u><신 설></u>	1.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
	<u>과</u>
<u><신 설></u>	2. 인구 증감 및 저출산·고령
	사회 대응 등에 미치는 효과
<u><신 설></u>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
	로 정하는 사항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
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발 등)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	
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7의2.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
	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8. (생 략) <신 설> 균형과 질적 향상,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인 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인구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 안

8.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지방재정의 인구 증감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등 성과 분석 등을 위한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 인지 예산서 작성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조 정하기 위하여 지방인구영향평 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 인지 예산서 작성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인구영향평가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인 구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국공립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출연 연구원
-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 익법인 중 인구정책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 인지 예산서 작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인구영향평가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총괄 하는 인구정책담당관과 실무담 당자를 지정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 1. 인구인지예산 대상 사업 선

 정 및 관리
- 2. 인구인지예산 대상 사업 성

 과 및 지표 관리

<신 설>

- 3. 인구영향평가기관 지원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인구영향 평가위원회와 제2항에 따른 인 구영향평가기관, 제3항에 따른 인구인지예산 전담부서 등 설 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
- 제36조의3(인구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향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위한 목표 달성에 미칠 영향을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인구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한다.
 -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인구인지 예 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③ 인구인지 예산서는 인구 증 감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등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 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 7. (생략)

<신 설>

8. ~ 14. (생 략)

②·③ (생 략)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 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 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 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 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신 설>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	카
며, 그 밖에 인구인지 예산/	서
작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	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1
	_
	- —
	_
	-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인구인지 예산서	
8. ~ 1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
시 등) ①	-
	-
	-
	- —
	- —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제36조의3에 따른 인구역	<u>인</u>
지 예산서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구인	-J
	<u> </u>

10. ~ 16. (생략) ② ~ ⑧ (생략) 9의3.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실 시한 인구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 및 정책 개선 실적 등을 점검하고 종 합 분석한 결과보고서(이하 "인구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 서"라 한다)

10. ~ 16.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